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법치책임 지속 강화

● 폭력범죄 엄단 · 전신사기 '독종' 근절 · 기업환경 개선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 검찰원 사업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 고의살인, 강탈, 랏치 등 범죄의자 6만 300 명을 기소하고 고의살인 등 엄중한 폭력범죄사건 4 만 9,000 건, 범죄의자 5 만 8,000 명을 심리 종결 했으며 법에 따라 행인 고의 운전충돌 사고, 교정폭행 등 초점을 둘러싼 범죄를 엄하게 징벌했다.

◆ 대중 생명안전 위해 각종 '폭행', '악행' 지속 엄벌

최근 몇년 동안 범죄 성과가 뚜렷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사건도 종종 발생했다. 어떤 사건은 대중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하고 어떤 사건은 사

회 도덕과 인성의 경계선에 충격을 주어 대중의 리의를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쳐 사회를 침식하는 '독종'이 되었다.

악의적인 살인, 부녀아동 유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폭력범죄 등 대중의 반성이 강렬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하게 중하게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정보발표, 경고교양 등 사업을 잘하여 범죄에 대한 타격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인다.

◆ 전신인터넷사기 '독종' 제거, 대중 안전 수호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 검찰원 사업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법에 따라 만마 북부 등 국제전신인터넷 사기 관련 범죄를 엄정하고 <국제전

신인터넷사기 형사사건 처리 업무 의견>을 제정했다.

전신인터넷사기 범죄는 그 수단이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은폐성, 미혹성이 강하고 불법 산업사슬이 서로 얽혀 있다. 피해자중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 가산을 탕진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 심신이 붕괴되어 대량의 인간비극을 초래했다. 사기분자들이 탈취한 것은 대중들의 '양로금', '진찰비', '구명돈'이다.

전신인터넷사기 '독종'을 제거하려면 범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고 관리수단을 혁신하며 부문간 협력을 결집시켜 범죄사슬을 엄하게 타격하고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화카드의 원천 관리를 단단히 틀어쥐고 대중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국제집법 협력을 심화하고 사기방지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 기업 경영 '연성환경' 최적화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 검찰원 사업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법치력량 강화로 자신감을 제고하고 발전을 촉진한다', '차압, 압류, 동결 등 강제조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법에 따라 기업과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등 사회 관심사를 직시하고 법치의 강력한 조치로 경영 '연성환경'을 최적화하여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

법치력량으로 각종 경영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체제와 기제의 장애를 타파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기할 수 있는 발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낮추어 기업의 투자, 발전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 / 신화넷

룡정 경찰, 'AI 얼굴 바꾸기' 사기사건 적발



최근, 룡정시공안국 로투구진파출소는 관할지역 주민으로부터 "한 로인이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로인의 아들은 장기간 외지에서 일하고 있으며 집과 연락이 뜸하다. 사건 당일, 로인은 갑자기 아들로부터 위챗 영상통화를 받았다. 영상 속 '아들'은 자신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3,000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인은 위챗 계좌이체 작업에 익숙하지 않아 주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

은 즉시 영상통화로 로인의 '아들'과 사실 확인을 시도했다. 경찰의 질문에 '아들'은 말을 더듬고 얼버무리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AI 얼굴 바꾸기' 기술을 리용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즉시 아들의 직장에 연락을 취했다. 알아본 결과 현재 로인의 아들은 남방지역의 한 공사장에서 근무중이며 최근 해외에 나간 적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로인은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경찰에 감사

를 표했다.
/ 오건기자
/ 사진 룡정시공안국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재한 중국인 향한 보이스피싱 뎃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정상 구인광고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각별히 조심해야

한국 법무법인 자유측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인터넷을 리용한 금융사기) 범죄가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금법>)을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한 중국인들이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의도치 않게 범죄조직의 범죄도구로 리용되는 사례가 속속부절 늘어나서 안타깝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사전에 높이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자유측은 특별히 당부했다.

자유측은 최근에 소송대리를 맡아 승소한 재한 중국인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을 기자와 공유했다.

지난 2월 8일, 한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재한 중국인이 정상적인 구인광고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자유 대법분사무소에 소송대리를 맡긴 이 사건의 주인공

인 재한 중국인 반 (樊)씨는 법원으로 부터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판정받은 재한 조순족 김씨는 유기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반씨와 김씨는 각각 지난해 6월과 7월경, 각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혹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바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보이스피싱조직의 치밀한 함정—위장된 아르바이트

<전금법> 제 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리용하여 타인을 기만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리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 ▲자금을 직접 교부 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반씨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체포 및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도 법무법인 자유 대법분사무소 최필재변호사와 김용화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범인 김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반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이 참작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죄를 기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이 랑형에 반영되었다고 한다.

법무법인 자유 대법분사무소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충분히 리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에 연루된 점을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반씨가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했다.

재한 중국인 알아야 할 예방책

자유측은 "위장 아르바이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 수령, 전달, 환전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제안은 의심해야 한다.

●급여를 현금으로 당일 지급한다는 조건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정식으로 등록된 배달·택배 업체가 아니라면 해당 회사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와 직접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업무 지시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 한국 경찰청이나 주한 중국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한 아르바이트를 부분별하게 수락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사례이다.

면접 절차를 건너뛰고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진행되는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특히 현금 수령·전달·환전 업무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정봉기자

런전화 :

13604447151



차로 사람 쳤는데 운전수 형사책임 없어... 왜?

상해시, 행인 신호위반 사건 심리

한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치여 숨졌지만 법원은 운전수에게 형사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반면에 교통사고죄로 행인 주모에게 2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바로 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받았던 '상해 행인신호위반 사건'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사회적으로 열띤 토론이 일기도 했다. 행인의 신호 위반이 죄로 판정되는가? 자동차가 정상 운행하다가 사람을 치면 책임을 지야 하는가?

《법치일보》 기자는 최근 상해시 보타구민법원을 찾아 법원의 사건 판단 자조지중에 대해 료해했다.

'3, 2, 1...' 동서 방향의 빨간 신호등이 초읽기를 제시하고 있을 때 전동자전거를 운전한 퉁모는 이미 정지선을 벗어났고 파란 신호등이 켜졌을 때에

는 차량 속도가 이미 법정 시속을 초과했다. 이때 남북 방향의 빨간 신호등이 이미 켜졌는데 행인 주모가 횡단 보도에 뛰어들었다. 사건 발생전의 현장 모습이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부딪혔다. 퉁모가 전동자전거와 함께 한 소형 빠스의 왼쪽 앞부분에 쓰러졌다. 빠스 운전수 류모가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깔고 지나갔다. 행인 주모는 이 상황을 보고는 재빨리 현장에서 도주했다. 퉁모는 구조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 서북 모퉁이가 바로 주모가 당시 있었던 위치입니다..." 보타법원 형사재판정의 재판원이며 본 사건의 주심법관인 설의사가 사건 현장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가리키며 소개했다. 주모가 교차로의 신호등을 살피지 않고 오가는 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맞은편으로 돌진한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설의사는 "행인은 약자에 속하기에 특별 보호를 해주고 더 높은 도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회상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안전법에서 행인이 자동차에 비해 더 상해받기 쉬운 점을 감안해 정한 '행인양보원칙'이긴 하지만 행인이 교통출회에서 자연적으로 면책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자보호원칙에 대한 리해와 적용이 안전통행원칙을 롱가해서는 안되지요."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제 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행인이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횡단시설이 없는 구간을 건널 때는 안전을 확인한 뒤 통과해야 한다.

법원에서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설의사는 사건 현장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수차 반복해 보고 나서 주모의 행위가 확실히 도로교통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정했다. "행인이든 차량이든 위법자는 응당 그 위법 정도, 사고책임 크기 등 요소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지야 한다."

그럼 행인도 교통사고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 설의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비록 실전에서 교통사고죄의 범죄주체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수 등 교통운수에 종사하는 인원이긴 하지만 행인 등 비교통운수 인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심리 법률 구제 응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제 1조는 교통사고죄의 범죄주체에 대해 더한층 세밀한 규정을 내렸다. "교통운수 종사인원 혹은 비교통운수 종사인원이 교통운수 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 토대에서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 형법 제 13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

/ 법치일보

거짓 촬영 현상 바로잡아야

최근 여러 사회 초점들이 거짓 사진, 영상으로 조작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촬영 사진, 영상은 몇가지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다.

◆ 사회 초점이 사진 조작의 '중대한 피해지역'으로 되고 있다

영상을 제작하여 주목을 받기 위해 사회 초점을 리용해 가족갈등을 조작하고 비참한 경력을 날조하며 신분대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갈등을 모방하며 사회불안을 과장하여 대중의 감정을 자극한다.

◆ 사진 영상 촬영은 조직화, 기구화 특징이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짓 사진, 영상 촬영은 대부분 조직화, 기구화로 운영되고 있다. 과정을 보면 촬영 영상은 현실에서의 우발성, 무작위성 및 극단성을 확대하여 의도적으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를 조성한다. 거짓 사진, 영상 촬영 사건이 확산

되는 과정과 각 지역 관련 부문이 조사한 전형 사례를 보면 온라인 촬영은 이미 명확한 불법산업사슬을 형성했다. 상류에서 인물 설정, 대본 줄거리를 조작하고 중류에서 촬영, 전파하며 하류에서 판매 및 수익화한다.

◆ 거짓 사진 영상 촬영의 하류는 생방송 물건 판매이다

관련 부문이 개입하여 불법산업류량 수익화 경로를 차단하면서 상중류의 조작력을 약화시킨다. 관리감독부문은 플랫폼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집행 및 사법 부문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진 영상 촬영 조작 행위에 대해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며 특히 조직적으로 요인을 날조하거나 '인터넷수군'으로 조작하거나 류량 흡입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 종신넷